

일본 삼림조합의 최근동향

유병일/임업연구원, 농학박사

1. 제도의 연혁

현재의 삼림조합은 삼림조합법(1978년 법률 제36호)호에 기초해서 설립되었는데 삼림조합제도의 발족은 19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7년에 제정된 삼림법이 1907년에 개정됨에 따라 삼림조합제도가 발족된 이래, 1939년 개정에 따라 연합회조직의 형성, 1951년에 제정되어 금일에 이르고 있어 8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있다.

삼림조합법의 목적은 『삼림소유자의 협동조직발전촉진과 함께 산림소유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및 산림의 보속배양 및 산림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한다.』로 되어 있다. 삼림조합은 산림소유자의 협동조직으로서 목재생산과 국토·환경의 보전, 수자원의 함양등 산림을 통한 인간의 생활환경 보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

이를 위해, 현행의 삼림조합은 협동조합원칙에 기초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합원 자격을 산림소유자로 규정해서, 산림사업의 수탁등의 필수사업제, 임도의 조합원의 이용제한의 예외규정등 타협동조합과는 상이한 제도적 규정도 갖고 있다.

2. 조직과 경영기반

삼림조합은 176만명의 산림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해서 조직되었으며 지구내 민유림면적의 69%에 해당하는 1,156만ha를 커버하고 있다. 조합원에는 개인, 법인, 시정촌, 재산구, 생산삼림조합 등이 포함되어 지구내 산림소유자 334만중 53%가 가입되었다.

이중 생산삼림조합은 산림경영전부의 공동화를 목적으로 해서 조합원이 산림의 사용수익권을 조합에 이전해서 자본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산삼림조합 자신이 산림경영을 행하는 형태로 입회임야 등에 관한 권리관계의 근대화 조장에 관한 법률(1966년 법률 제126호)에 따라 설립이 촉진되어, 3,100조합이 설립되었다.

삼림조합은 대체로 시정촌 내지는 군단위에 1,674조합이 설립되어 있다. 합병의 추진에 따라 조합규모가 확대되어 시정촌의 행정구역의 일부를 지구로하는 조합이 91조합, 시정촌의 구역전체를 지구로 하는 조합이 1,290조합, 2개 시정촌이상에 걸친 조합이 293조합이다. 또, 이들의 경영기반도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는데, 전과 마찬가지로 경영기반이 취약한 조합도 아직 다수 남아있다.

연합회는 도도부현단위에 47개의 삼림조

합연합회(삼연)와 전국삼림조합연합회(전삼연)의 48연합회가 설립되어있다. 도도부현단위에 설립되어있는 47개의 삼연은 삼림조합 및 생산삼림조합 등을 회원으로해서 판매·이용·구매·금융·지도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판매사업에는 37개의 삼연이 117개의 목재판매시장을 개설해서 국산재의 판매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삼연은 47 도도부현삼연을 회원으로해서 판매·구매·지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삼림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단, 1970년부터 전삼연이 ICA(국제협동조합동맹)에 가입해서 JJC(일본협동조합연락협의회) 가맹단체의 일원으로 농업협동조합·어업협동조합·생활협동조합과 제휴해서 국제적인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3. 운영과 재무

삼림조합의 기관은 조합원에 의해 구성

표-1. 일본 삼림조합제도의 변천

년차	주요 사항
1897	삼림법 공포
1907	삼림법 개정, 삼림조합제도창설(조림·사업·토공·보호의 4종조합의 임의설립·강제가입)
1911	삼림조합설립장려규칙(치수관계의 삼림조합설립에 장려금교부)
1926	임업공동시설장려규칙(삼림조합이 신설하는 임도·운반시설, 저목장, 목탄창고 등에 대한 조성 및 그것을 계기로한 조합의 설립추진)
1939	삼림법 개정에 의해 삼림조합제도 개정(조합종류를 사업직영·사업조정조합의 2종류를 해서 강제가입·강제설립·출자제를 채택하고 원칙적으로 조합지구를 시정촌으로 하였으며, 연합회제를 인정.)
1941	목재통제법 공포
1951	삼림법 개정에 의해 삼림조합제도 개정(협동조합원칙을 기초로 시설조합·생산조합·삼림조합연합회로 하였음)
1952	도도부현삼림조합연합회의 조직변경, 전국삼림조합연합회의 설립
1956	전국삼림조합연합회, 삼림공제사업을 개시
1960	많은 현삼림조합연합회에서 공판시장을 개설
1963	삼림조합합병조성법공포
1964	임업기본법 공포, 익년부터 임업구조개선사업이 실시됨
1970	전국삼림조합연합회, 국제협동조합동맹(ICA)에 가맹
1974	삼림법 개정(삼림조합의 목적규정을 개정, 사업능력의 확대, 관리 운영제도의 개선책)
1978	삼림조합법 공포(단독입법화, 삼림조합과 생산삼림조합의 제도적 분리등)
1987	삼림조합법 개정(사업 범위의 확대등)

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총회, 업무집행 및 대표기관으로서의 이사,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로서 구성되어진다. 또, 정조합원의 총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일정사항에 대해서 총회를 대신해서 조합의 의사결정을 총대회에서 행하고 있다. 현재 967조합이 총대회제를 채용하고 있다.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선출은 선거에 의한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정관에 정한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는 방법도 있는데 972조합이 이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 이사도 정조합원이 원칙이지만, 정수의 5분의 2까지는 원외이사도 인정되고 있다. 삼림조합에는 상근이사 698인, 비상근이사 18,830인, 감사 5,141인의 계 24,669인의 임원과 8,881인의 직원외에 조림과 벌채등의 작업을 행하는 작업반원 49,166인이 근무하고 있다.

삼림조합의 재무는 표-3과 같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1인당 평균금액이 18,000 엔으로서 삼림조합에서 자본장비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와 지도사업에 부과금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 운영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삼림조합의 재무제도는 농업협동조합등과 같은 형태로 협동조합으로서 주식회사등과 상이한 특징이 있다. 우선, 잉여금의 배당은 이용분량 또는 출자비율에 따라 행해지지마는 출자비율배당은 정령(政令)에 따라 7%로 제한되어 있다. 또, 이용고배당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와같이 출자금으로서 5년을 기한으로 출자되고 있다. 또,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준비금으로 해서 적립하며, 20분의 1이상을 교육정보자금으로서 차기사업년도에 이월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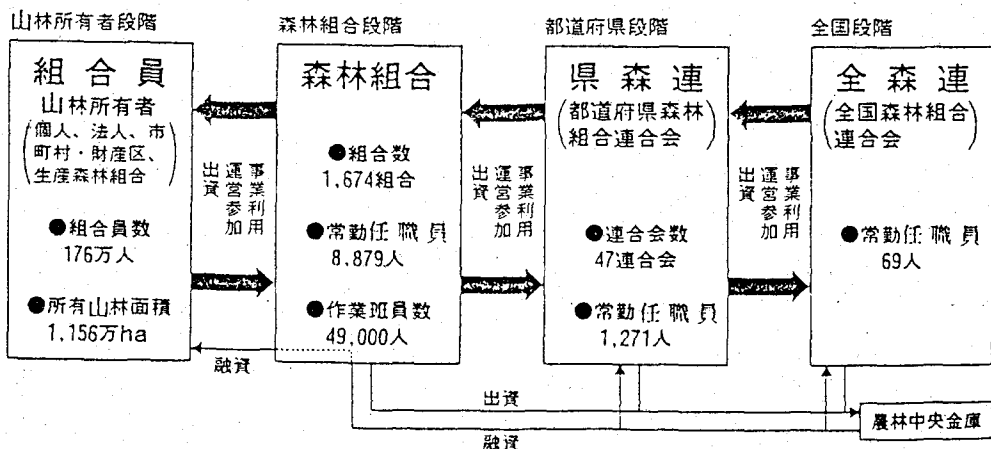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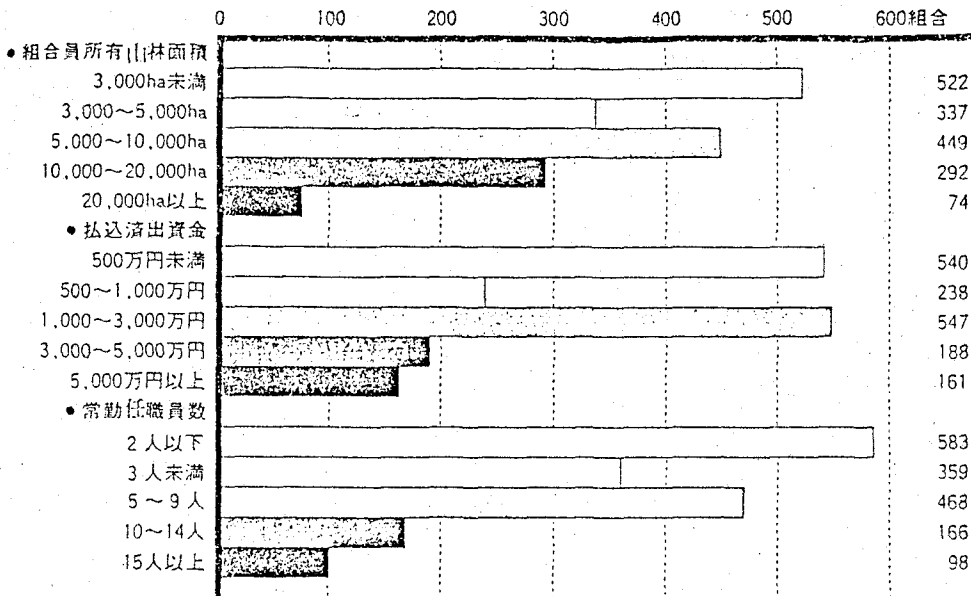


그림-1. 삼림조합의 계통조직



資料：林野庁「森林組合統計」

그림-2. 삼림조합의 경영기반현황('88년도)

표-2. 삼림조합의 주요 공동이용시설(1988년도)

공동이용시설구분	조합수	규모수량
묘 포 장	257	63,407a
제 재 공 장	226	26,330kw
칩 공 장	61	9,969kw
토 장 · 저 목 장	428	284ha
소 유 산 림	364	11,107ha
차 지 · 분 수 림	689	89,837ha
사무용 컴퓨터	221	262台
로 그 로 다	92	148台
포 크 리 프 터	404	734台
임 내 작 업 차	656	1,354台
트 랙 터	410	726台
트 력	1,020	2,517台
인 력 수 송 차	864	2,352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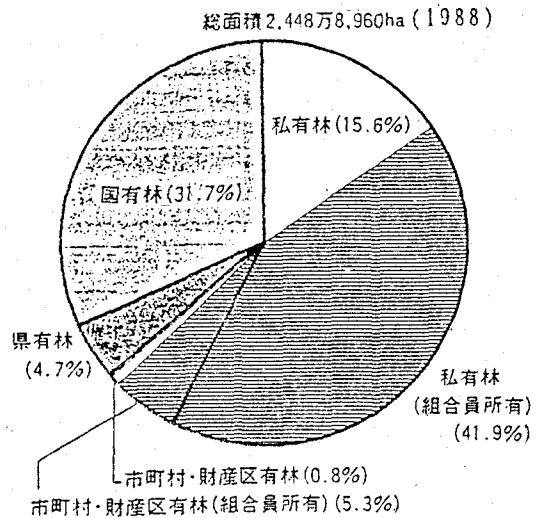


그림-3. 지역내 삼림면적의 내역

표 3-1. 손익계산서('87년도)

구분		조합수	비용	수익
부 문 별	지도	1,634	2,307,941천엔	3,010,108천엔
	판매	1,436	89,820,555	103,865,058
	구매	1,649	21,549,661	24,917,741
	이용	1,681	108,331,656	1,136,337,998
	금융	1,480	11,881,677	13,365,251
	임지등처분	3	16,300	16,300
	삼림경영	9	12,338	13,161
	신탁	2	0	0
계		1,698	233,920,128	281,525,617
사업총손익	이익 손실	1,686 11		47,609,565
사업관리비		1,696	44,169,986	
사업손익	이익 손실	1,148 553		4,478,986
사업외손익	수익	1,695		5,917,700
	비용	1,469	5,706,039	
경상손익	이익	1,428		4,313,697
	손실	271	664,533	
특별손익	이익	847		4,943,918
	손실	908	4,859,999	
세금공제전 당시순손익	순이익	1,513		4,214,938
	순손실	185	481,855	
특정공제금	여입	18		7,904
	조입	16	6,917	
법인세 및 주민세액		1,155	1,379,344	
당기잉여금	잉여금	1,487		2,843,378
	결손금	212	488,652	
전기조월 잉여금	잉여금	1,373		634,312
	결손금	274	2,292,363	
당기미천분 잉여금	잉여금	1,422		2,926,534
	결손금	285	2,229,865	

표 3-2. 대차대조표(1987년도)

자 산				부 채 · 자 본			
과 목		조합수	금 액	과 목		금 액	
유 동 자 산	현금 예금	1,704	31,578,302	유 동 부 채	수탁판매대금	614	5,066,93
	계약금	1,403	12,039,306		계약금	1,297	6,452,153
	상점자산	1,323	13,677,794		단기차입금	914	32,790,424
	판매가도금	599	5,687,965		미불금	1,550	22,301,711
	전도금				기타	1,563	17,570,995
	단기대부금	232	1,959,323		계		84,181,876
	기타	1,572	49,922,093		계		84,821,626
계			114,64,783	고 정 부 채	장기차입금		84,821,626
유형고정자산		1,463	36,699,451	고 정 부 채	농림공고차입금	1,445	147,694,839
무형고정자산		870	363,011		퇴직급여인당금	1,332	12,806,421
장기대부금		892	75,612,651		기타	240	2,071,819
농림공고 부대금					계		247,394,705
고 정 자 산	계통출자금	1,695	5,574,957	자 본	특정인당자금	20	120,155
	계통외출자금	1,334	652,776		불입계출자금	1,790	31,210,961
	임도미수 부과금	299	9,627,955		회전출자금	51	211,745
	기타	336	2,347,564		계		31,422,706
	계		261,975,164		잉 여	준비금, 적립금	1,528
당기미처리 결손금		290	2,229,865	금	당기미처분 잉여금	1,422	2,926,534
계					계		15,069,812
합계			379,069,812	합계			379,069,812

4. 사업전개

(1) 주요사업의 동향과 신규사업

삼림조합의 사업은 지도·판매·구매·이용·금융·임지처분·산림경영·신탁의 8가지 사업부문으로 구분되는데 부문별 사

업총손익은 이용부문이 60%, 판매부문이 27%를 점하고 있다. 표-4는 주요사업의 추이를 표시하고 있는데 이용부문의 중심 사업으로서 조림·육림사업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인공림 자원의 성숙화에 대응함에 따라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판매부문도 최근 수년간 임산·판매사업은 정체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구매·금융사업도 침체가 현저해서 신규사업전개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지금까지의 조림·육림 작업을 중심으로해서 산림조성사업에 참가해서 산림의 장기사업·경영수탁사업의 추진, 부채산주대책과 임지공급사업, 임도·치산사업등으로서의 집중등 지역삼림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역조건에 알맞는 가공제조사업과 건설등의 사업, 특용임산물의 판매·가공 산림레크레이션등 신규사업의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등이 산촌지역의 진흥과 노

동력대책 측면에서 필요하다.

특히 임가와 임업 노동자의 정주조건을 크게 좌우하는 산간·중산간지의 농업과 지역산업진흥, 생활환경의 정비등에 있어서 임업측과 삼림조합의 입장에서의 대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삼림조합이 시정촌과 타협동조합조직등과 협력해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목재생산과 유통가공

삼림조합에 있어 목재생산(임산사업)은 국내의 목재상산량이 매년 낮아짐에 따라 점차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민유림 목재생산량에서 점하는 비율은 17%로 여기에 임가 등이 벌채하는 목재를 삼림조합이 집하판매하는 판매사업량을 추가하면 25%에 가깝다. 목재취급량중 일반용재가 69%, 펄프재가 18%, 기타가 13%로 되어 있다.

표-4. 삼림조합의 주요사업량 추이

구분 년도	산림 조성사업			임산사업	판매사업	가공제조	구매사업	금융사업
	조림면적 (ha)	보육면적 (ha)	기타취급액 (백만원)	목재취급량 (천 m^3)	목재취급량 (천 m^3)	사업취급량 (백만원)	취급액 (백만원)	대부잔액 (백만원)
'65	39,569	137,102	3,278	1,342	849	2,587	5,512	48,837
'70	72,290	308,908	7,039	2,042	1,077	5,391	11,641	99,730
'75	72,961	503,544	10,035	2,090	858	12,602	11,641	150,225
'80	77,202	790,482	22,613	2,457	1,291	22,606	29,198	223,382
'85	61,723	811,680	24,936	3,576	1,702	25,465	26,015	245,084
'86	57,654	816,470	29,272	3,800	1,658	26,438	24,984	231,282
'87	53,181	804,498	30,241	3,981	1,728	28,907	23,765	212,494
'88	50,729	790,024	33,426	3,828	1,704	31,650	24,211	194,418

임산사업은 1,096조합에서 실시하고 연간목재생산량은 1,000 m^3 미만이 387 조합, 1,000~3,000 m^3 이 303조합, 3,000~5,000 m^3 이 162조합, 5,000~10,000 m^3 이 161조합, 10,000 m^3 이상이 83조합에 달하고 있다. 일반적추세로서 5,000 m^3 이상의 생산규모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삼림조합 목재취급량의 대부분을 점하는

일반용재의 유통에 대한 개요가 그림-4 표시되어 있다. 삼림조합은 382만 m^3 의 취급량중 42%를 도도부현삼연에 출하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경영하는 시장과 제재공장의 원료로 충당하는 외에 지역제재공장과 일반시장 등에도 출하하고 있다. 도도부현삼연에는 삼림조합으로부터의 출하 160만 m^3 에 추가해서 조합원 이외로부터도

표-5. 신규사업의 동향(1988년도)

사 업 구 분	실시조합수	사업규모
치 산	493조합	8,377백만엔
입 도	722	12,039백만엔
산림보건기능증진시설사업	40	709백만엔
임지공급사업	118	3,181ha
산림경영사업	397	61,268ha
삼림경영수탁사업	19	15,320ha
제재가공사업	217	345,846 m^3
칩가공사업	82	458,257 m^3
건표고가공사업	36	46,274kg
기타가공제조사업	299	30,741백만엔

표-6. 목재생산량 및 삼림조합의 임산·판매사업의 비율

단위 : 천 m^3 (%)

구분 년도	목재생산량			삼림조합	
	총수	국유림	민유림	임산사업	임산 판매사업
'65	49,534	15,815	33,719	1,342(3.6)	2,191(6.2)
'70	45,351	14,721	30,630	2,042(6.7)	3,049(10.0)
'75	34,155	11,669	22,486	2,090(9.3)	2,748(13.1)
'80	34,051	10,359	23,692	2,457(10.4)	3,747(15.4)
'85	32,944	9,883	23,061	3,576(15.5)	5,278(22.9)
'86	31,520	9,431	22,089	3,800(17.2)	5,457(24.7)
'87	30,893	9,123	21,665	3,981(18.4)	5,709(26.4)
'88	30,930	8,438	22,381	3,828(17.1)	5,532(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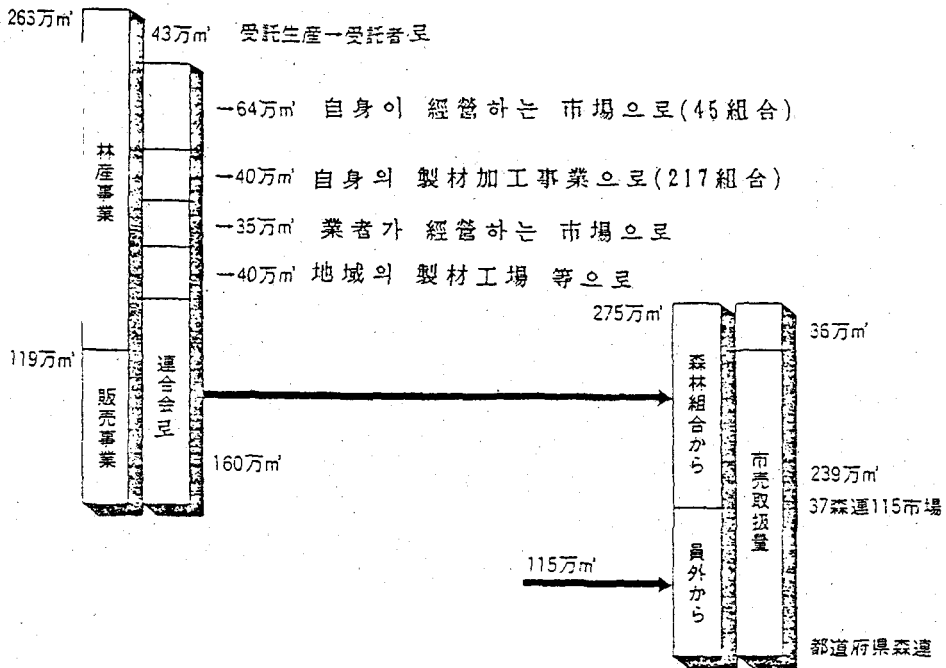
115만㎡의 목재를 집하해서 그 대부분을 목재판매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목재판매 시장은 37부현삼연에 115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제재가공사업의 226조합에서 실시해 제재품의 생산취매 35만㎡, 수탁가공 5만㎡라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칩가공사업에 대해서는 82조합이 실시해서 생산량이 46만㎡에 이르고 있다. 또한 근년, 특히 집성재와 프리커트가공, 통나무집과 주택건축 등에 전념하는 산림조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목재업체와 공동으로 임업구조개선사업을 도입해서, 국산제재공시설을 운영하는 산림조합도 증가하고 있다.

5. 작업반과 임업노동대책

산림조합은 88,357인의 고용노동자와 49,166인의 작업반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표-7에서는 보는바와 같이 매년 작업반원의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작업반원의 내역은 벌출이 8,549인, 조림이 36,701인, 공장 기타 3,916인으로 되어있는데 최근 수년간 벌출작업반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조림작업반은 '81년도의 51,938인을 정점으로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

임업노동임금은 '83년도부터 그림-5에서 보는바와같이 건설노동임금과의 격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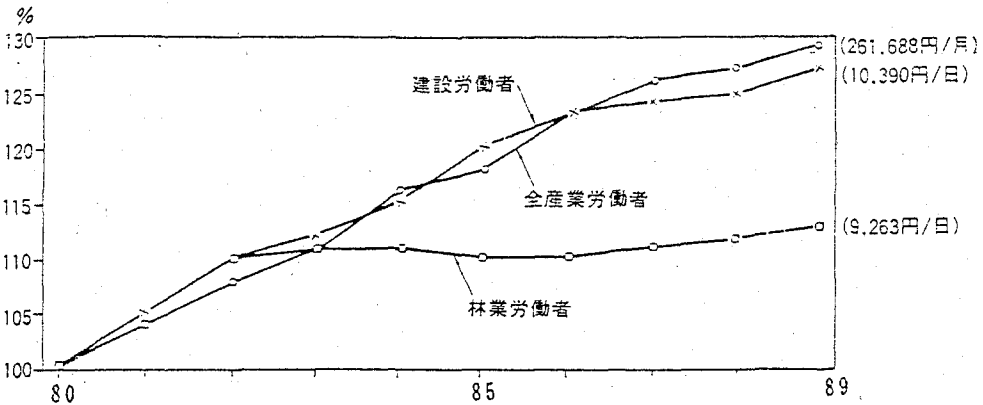


資料: 林野庁「森林組合統計」、全森運「森林組合連合会統計」、府県森運
不材市売事業の状況、「森林組合の活動に関する調査」

그림-4. 산림조합관계의 일반용재유통 ('88년도)

표-7. 연령 계층별 작업반원수의 추이

년령	년도	'75	'80	'85	'86	'87	'89
계		56,921	63,720	58,228	55,837	52,134	49,166
20세 미만		226	165	1,479	1,424	1,412	1,309
20~29		11,759	8,496	5,394	5,006	4,430	3,818
30~39			20,014	12,870	11,257	9,911	8,739
40~49		36,299					
50~59			23,654	24,527	23,563	21,852	20,289
60세 이상		8,637	11,391	14,018	14,587	14,529	14,911



資料 : 労働省「林業労働者職種別賃金調査」、「屋外労働者職種別賃金調査」、「毎月勤労統計調査年報」

- 注 : 1. 林業労働者賃金은 伐出業職種平均
 2. 建設労働者賃金은 建設屋外作業職種平均의賃金

그림-5. 임금노동자들의 임금지수추이

확대되어 '88년에는 건설의 9,820엔/일에 비해 임업이 8,979엔/일로 큰 차로 나타나고 있다. 또 사회보험의 가입상황을 삼림조합작업반에 대해서 비교해 보아도 노동재해 95% 고용보험 46%, 건강보험 13%, 농림연금 7%, 임업퇴직금공제제도 45%

로 특히 건강보험, 연금등의 가입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들 사회보험료의 사업주부담분은 목재생산에서 임금의 3할정도, 조림에도 2할정도에 달해서 재원확보가 문제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일시금의 지급, 사회보험료의 조

성, 연수등을 대상으로해서 현단독의 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기간적 청년노동자의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직원과 같은 대우를 통한 젊은 노동자의 확보(靜岡縣天龍市森林組合 和歌山縣龍神村森林組合等), 둘째, 제3섹타설립에 의한 기간적 청년노동자의 확보(悠本俚小國町の 悠木産業株式

會社, 愛媛縣久方町の 株式會社, 宮岐縣諸塚村的 國土保存森林作業隊), 셋째, 현삼연에 의한 고성능기계의 도입과 작업원의 육성, 넷째, 삼림조합사업의 다각적전개에 의한 년중고용체제의 확보등의 선진적인 대응도 고려되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달하고 있다.

★

〈最近의 버섯生産事情〉

(日本 山林誌 '91. 5月號)

生産現況과 問題點

李元珪 譯 / 임업연구원

譯者註: 日本 森林總合研究所 버섯科長을 지낸 古川久彦박사는 定年退任後 現在 大分縣의 大分縣버섯研究指導센터 所長으로 일하고 있다. 古川久彦博士는 버섯研究와 國際事情에 該博한 眼目을 갖고 있는 分으로 이분의 버섯産業에 대한 見解를 紹介한다.

요즘 日本의 버섯業界에는 여러가지 問題가 累積되어 있어, 좀처럼 밝은 氣分이 되지 않는다. 特히 표고産業에 있어서는 그 霧圍氣가 顯著하다. 問題中에 가장 큰것은 무엇보다도 換率의 影響으로 因하여 생기는 乾표고輸出이 昏迷狀態에 있는 것이다. 輸出價格 上昇에 따라 輸出額은 어느程度 낮은 傾向이라고는 하나, 아직

도 本軌道는 아닌것이다. 이에 加重되는 것은 外國으로부터 오는 攻勢인 것이다. 最近 世界의 大部分 國家에서 표고栽培를 하고 있다. 一部國家를 除外하면 버섯 品質에 問題가 있으나 合理的인 栽培方法으로 比較的 적은費用으로 生産하고 있다. 그래서 低廉한 價格으로 輸入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日本내事情도 數年前과 比較하면 큰 變化가 보인다. 첫째 最近 食生活에 있어서 嗜好性이 變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意識的으로 버섯을 싫어하고, 젊은 사람들은 乾표고의 香氣가 싫다고 말한다. 또한 主婦들은 調理하는데 손이 많이 가는 乾표고를 敬원한다. 그 때문에 乾표고의 國內消費가 抑制되고 生표고나 生野菜로서 取級하고 있는 '버섯 需要가 急增하고 있는 것